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757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 강경숙·차규근·황운하

김준형 · 정춘생 · 김재원

신장식 · 서왕진 · 강유정

백선희 • 김선민 • 김문수

진선미 • 고민정 • 문정복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 실시를 위하여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수학교 등) ①・② (생	제15조(특수학교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 실
	시를 위하여 유치원에 특수학
	급을 둘 수 있다.
<u> <신 설></u>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3항에 따라 유치원에 특수학급
	을 두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u>수 있다.</u>